<별지 제2호 서식>

표제부

1. 문서번호 :
2. 보고일자 :
3. 취소/정정보고시 종전문서번호* :
4. 거래순번 : (거래순번/총거래건수)

금융기관 : 고액현금거래보고서

(Currency Transaction Report)

2008.12

본 보고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Ⅰ.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1.보고기관명		2.보고책임자명	
3.보고담당자명주)		4.보고담당자 전화번호	

주) 보고기관 본점의 고액현금거래보고서 담당자를 기재

Ⅱ.고액현금 거래자에 관한 정보

Ⅱ-1.공통사항

5.거래자(사업자)명	
6.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구분	1□주민등록번호(개인) 2□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3□사업자등록번호 4□여권번호 5□법인등록번호 6□외국인등록번호 7□국내거소신고번호 8□투자등록번호 9□고유번호/납세번호 11□BIC코드(SWIFT) 12□해당국가법인번호 99□기 타
7.거래자(사업자)실명번호	
8.거래자 국적 주1)	1□한국
	2□외국(국명:_____)

Ⅱ-2.개인의 경우

9.거래자 우편번호/주소*	(-)		
10.거래자 생년월일* 주2)		11.성별* 주2)	1□ 남 2□ 여
12.거래자 전화번호*			
13.실명조합번호* 주3)			
14.여권번호* 주4)			
15.거래자 직업/사업내용	15)-1직업구분*	□직장인 □자영업자 □무직 □파악할 수 없음	
	15)-2직장(회사)명*		
	15)-3업종코드* 주5)		
	15)-4사업자등록번호*		

Ⅱ-3. 법인·단체의 경우

16.대표자명*	
17.대표자 실명번호 구분*	1□주민등록번호(개인) 2□여권번호 3□외국인등록번호 4□국내거소신고번호 5□기타
18.대표자 실명번호*	
19.대표자 국적주6)	1□한국
	2□외국(국명:_____)

20.사업체(단체) 설립일*			21.업종코드* 주5)	
22.법인등록번호주7)				
23.사업체(단체) 우편번호/주소	23)-1본점*	(-)		
	23)-2사업장*	(-)		
24.사업체(단체) 전화번호	24)-1본점*			
	24)-2사업장*			

주1) II.의 '6.거래자 국적'은 한국 또는 외국 중 선택해야하고, 외국인일 경우 '국명'을 기재해야한다.
주2) '10.거래자생년월일', '11.성별': 개인의 경우(II-2), '8.거래자 국적'이 외국인이면서 비거주자인 경우는 필수사항
주3) '13.실명조합번호'는 II.의 개인의 경우(II-2), '8.거래자국적'이 외국인인 경우로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국민(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없는 경우, 여권번호에 의한 실명번호 조립방법에 의거 국내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번호임
주4) '14.여권번호'는 II.의 개인의 경우(II-2), '8.거래자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로 II.의 공통사항(II-1) '6.거래자실명 번호구분' 항목에 5□ 외국인등록번호, 6□국내거소신고번호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
주5) II.의 11-2.개인의 경우 15)-3업종코드와 II-3.법인단체의 경우, 21.업종코드는 통계청 (www.nso.go.kr)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체계"를 따르며, 대/중/세/세세분류 모두 기재할 수 있다(예: 대분류 '01'농업일 경우, 뒷자리에 'Z'을 포함하여, '01ZZZ'로 보고).
주6) II-3.법인・단체의 경우, '19.대표자국적'은 한국 또는 외국 중 선택해야하고, 외국인일 경우 '국명'을 기재해야한다.
주7) '18.대표자 실명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한 경우, 필수로 기재해야한다.

III.현금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

III-1.공 통 사 항

25.거래발생일시			
26.거래영업점명			
27.거래채널	1□창구거래 2□자동화기기거래 3□기타		
28.거래수단	1□현금	29.거래금액	(원화)\
30.거래종류	1□계좌 2□비계좌 (1□송금 2□외환 3□유가증권 4□기타)		
	1□지급 2□영수		
31.거래대리인 존재여부	1□존재 2□존재안함 3□파악안됨		

첨부(III-1).거래대리인 정보주1)

32.대리인명	
33.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1□주민등록번호(개인) 2□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3□사업자등록번호 4□여권번호 5□법인등록번호 6□외국인등록번호 7□국내거소신고번호 8□투자등록번호 9□고유번호/납세번호 11□BIC코드(SWIFT) 12□해당국가법인번호 99□기 타
34.대리인 실명번호*	
35.대리인 전화번호*	
36.대리인 국적주2)	1□한국
	2□외국(국명:_____)
37.거래자와의 관계	1□배우자 2□부모 3□자녀 4□형제자매 5□친척 6□상사 7□동료(친구)

	[8]□기타(기재_____) [9]□알수없음

주1) '31.거래대리인 존재여부' 항목에 '[1]□존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생성
주2) '36.대리인 국적'은 한국 또는 외국 중 선택해야하고, 외국인일 경우 '국명'을 기재해야한다.

III-2.계좌거래의 경우[주1)]

38.관련계좌번호	
39.계좌개설영업점명	
40.계좌개설일자	
41.계좌개설 대리인 존재여부	[1]□존재 [2]□존재안함 [3]□파악안됨

주1) (III-2) 항목은 '30.거래종류'가 '[1]□ 계좌'인 경우에 작성함

첨부(III-2).계좌개설 대리인 정보[주1)]

42.계좌개설 대리인명	
43.계좌개설 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1]□주민등록번호(개인) [2]□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3]□사업자등록번호 [4]□여권번호 [5]□외국인등록번호 [6]□국내거소신고번호 [7]□고유번호/납세번호 [9]□투자등록번호 [10]□기 타
44.계좌개설 대리인 실명번호	
45.계좌개설 대리인* 전화번호	
46.계좌개설 대리인 국적	[1]□한국
	[2]□외국(국명:_____)
47.계좌주와의 관계	[1]□배우자 [2]□부모 [3]□자녀 [4]□형제자매 [5]□친척 [6]□상사 [7]□동료(친구) [8]□기타(기재_____) [9]□알수없음

주1). '41.계좌개설 대리인 존재여부' 항목에 '[1]□존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생성

III-3.유가증권거래의 경우[주1)]

48.관련유가증권의 종류	[1]□환어음 [2]□약속어음 [3]□국채 [4]□공채 [5]□자기앞수표 [6]□당좌수표 [7]□가계당좌수표 [8]□보증가계수표 [9]□국고수표 [10]□양도성예금증서 [11]□선불카드 [12]□기타
49.관련유가증권번호	( ) ~ ( )

주1) '30.거래종류'가 [2]□ 비계좌 ([3]□유가증권)인 경우에 작성함

III-4.자기앞수표거래의 경우[주1)]

50.현금지급은행		51.현금지급영업점명	

주1) '48.관련유가증권의 종류'가 '[5]□ 자기앞수표인 경우'로서, 자기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타행발행 정액 자기앞수표를 '자기앞수표실시간정보교환규약'에 의한 정보를 이용하여 당일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급한 건에 한하여 작성함

IV.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주1)]

52.수취인계좌번호			
53.수취금융기관명		54.수취인(수취계좌주) 성명	

주1) 상기 항목은 현금거래정보가 '무통장 입금에 의한 송금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한다.

Ⅴ.취소 또는 정정보고에 관한 사항[주1)]

취소 또는 정정사유	

주1) 상기 항목은 본 보고서가 이미 보고된 건을 취소 또는 정정하는 보고인 경우에 해당하며, 500자 이내로 기입함

◇ 공통사항 : 서식의 입력항목 중 '*'로 표시된 항목은 모두 선택사항임

[고액현금거래보고서 작성방법]

1. 목 적

이 작성방법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작성하여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서에 대해 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이 작성안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1 "**보고기관**"이라 함은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의 주체로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2.1.2 "**거래자**"라 함은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대상으로서 보고기관과 금융거래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되는 자, 즉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제3호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을 말한다.

2.1.3 "**지급**"이라 함은 출금, 지출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보고기관으로부터 거래자에게로 현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2.1.4 "**영수**"라 함은 입금, 수납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거래자로부터 보고기관에게로 현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2.1.5 "**분할거래**"라 함은 하나의 보고기관에서 동일인 명의의 현금거래가 1거래일 이내에 1회 이상 이루어졌으며, 그 건별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보고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1.6 "**고액현금거래 전산보고 지침**"이라 함은 보고기관이 전자보고방식에 의한 고액현금거래보고서 작성시 준수하여야 할 표준으로서 금융정보 분석원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기타 이 작성안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본 작성안내에서 이와 달리 해설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사항

3.1 보고기관의 확정

현금의 지급과 영수를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취급한 당해 금융기관 등이 보고기관에 해당된다.

3.2. 보고기준금액

보고 금융기관 등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별도로 합산하여 보고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 보고기준금액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해, *2008*년 *3*천만원에서 *2010*년부터는 *2*천만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3.3 보고면제 대상거래

거래자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의 *2* 제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금융 거래가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3.4 보고의 시기

고액현금거래보고서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 *4*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고대상 금융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 적인 심사분석과 고액현금거래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거래발생일 익영업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3.5 보고의 방법

금융기관 등은 온라인 보고를 우선으로 하나, 온라인 보고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금융기관은 문서 또는 전자기록매체(플로피디스크 등)로 봉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 방식에 의한 보고 방법은 '고액현금거래*(CTR)* 전산보고 지침'에 따른다.

3.6 기타

동 작성 안내에서 해설되지 않은 부분은 본 작성안내에서 이와 달리 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4. 고액현금거래보고서의 항목별 작성요령

4.1 보고서의 구성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표제부,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고액현금거래자에 관한 정보, 현금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 취소 또는 정정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항목별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4.2 표제부

1. **문서번호 :** 보고기관별로 연도에 따른 일련번호를 기재한다.*(*예*: 2008*-일련번호*)*

2. **보고일자 :** 보고책임자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한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실제 보고한 일자를 기재한다.

3. **취소/정정보고시 종전 문서번호 :** 이미 고액 현금거래로 보고된 금융거래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취소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자세한 내용은 *"V.* 취소 또는 정정 보고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 종전에 보고된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4. **거래순번*(*거래순번*/*총거래수*) :** 분할거래의 동일자 거래건별 합계액이 보고기준금액 이상이 됨에 따라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경우, 전체 분할거래 가운데 당해 거래가 일어난 시간별 순서 및 전체 분할거래 건수를 기재한다.

4.3 고액현금거래 보고 내용

I.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1. **보고기관명** *:* 사업자명부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등록된 정식 명칭을 기재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호를 기재한다*(*예*:* 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2. **보고책임자명** *:* 보고책임자*(*예*:* 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인명*)*의 성명을 기재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3. **보고담당자명** *:* 본점 보고담당자*(*예 *:* 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실 고액현금거래보고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4. **보고담당자 전화번호** *:* 본점 보고담당자*(*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실 고액현금거래 보고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II. 고액현금거래자에 관한 정보

'III **현금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에서 제공되는 현금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되는 거래자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고객확인의무 또는 고객관계관리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객정보 등을 이용하여 기재한다.

*II-1*은 고액현금거래자에 대한 공통정보를 기재한다.

5. **거래자(사업자)명** *:*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된거래자의 이름 또는 명칭을 말하며,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개인성명*(*사업자명*)*, 법인은 법인명, 임의단체인 경우 단체명을 각각 기재한다. 외국인*(*개인*)*의 경우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 기재된 한글명칭을 기재한다.

6. **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 구분** *:* *7.*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번호를 확인한 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① [8]□투자등록번호 등의 의미

거래자*(*사업자*)*가 외국단체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① 외국단체등록증 ②당해 국가의정부발행 단체설립/설정 증명서류 ③투자등록증 ④외국인투자신고수리서*(*인가서*)*이며 이러한 실명확인 증표에 의해 확인된 번호를통칭하여[9]□투자등록증번호 등 이라 한다.

② [9]□기타의 의미

거래자(사업자)의 실명확인에 필요한 실명확인 증표가 '[1]□주민등록번호(개인) ~ [8]□투자등록번호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③ **거래자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없는 경우에 여권번호에 의한 실명번호 조립방법에 의하여 국내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실명조합번호는 '7.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란이 아닌 'II-2 개인의 경우의, 13.실명조합번호'에 기재한다.

7. **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 :**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된거래자의 실명확인번호를 말하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의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8. **거래자 국적 :** 고액현금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코드를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의미한다(예: 일본의 경우, 'JP'라고 기재)

II-2는 고액현금거래자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인 경우에 기재한다

9. **거래자우편번호/주소 :** 고액현금거래자의 자택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이 경우, 내외국인 공통으로 국내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며 주소의 최소단위(예: 번지수, 공동주택의 동호수)까지 기재한다. 고액현금거래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연락 가능한 실제 거소를 기재한다.

10. **거래자 생년월일 :** 고액현금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인이면서 비거주자인 경우 거래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11. **성별 :** 고액현금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인이면서 비거주자인 경우 거래자의 성별을 기재한다.

12. **거래자 전화번호 :** 고액현금거래자의 자택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이 경우,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예: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13. **실명조합번호 :** 고액현금거래자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이 없는 경우, 여권번호에 의한 실명번호 조합방법에 의해 국내 금융기관이 사

용하는 실명조합번호를 기재한다.

14. **여권번호 :** 고액현금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로 '6.거래자(사업자)실명번호구분' 항목에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선택하였을 경우, 거래자의 여권번호를 기재한다.

15. **거래자 직업/사업내용 :** 15)-2직장(회사)명에는 고액현금거래자의 현재 직장명(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명)을 기재한다. 15)-3업종코드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기재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5)-4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이 경우, 거래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회사)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체계에 따라 분류된 업종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www.nso.go.kr))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체계"에 의해, 대/중/세/세세분류를 모두 기재(5단위)할 수 있다.
    (예: 대분류 코드 '01' 농업일 경우, 코드 뒷자리에 'Z'을 포함하여 '01ZZZ'을 기재)

II-3은 고액현금거래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 기재한다.

16. **대표자명 :** 거래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대표자명을 기재한다. 외국인(개인)의 경우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17. **대표자실명번호 구분 :** '18.대표자 실명번호'를 확인한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8. **대표자실명번호 :** '17.대표자 실명번호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19. **대표자 국적:** 대표자의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적코드를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예: 일본의 경우 'JP'라고 기재).

20. **사업체(단체)설립일:** 고액현금거래자(법인, 단체)의 설립일을 기재한다.

    (예, 2008년 7월 10일 설립되었을 경우, 20080710으로 기재)

21. **업종코드 :**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체계에 따라 분류된 업종명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www.nso.go.kr))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

류 코드체계"에 의해, 대/중/세/세세분류를 모두 기재(5단위)할 수 있다.
(예: 대분류 코드 '01' 농업일 경우, 코드 뒷자리에 'Z'을 포함하여 '01ZZZ'을 기재)

22. **법인등록번호:** 법인·단체의 '18.대표자 실명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한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다.

23. **사업체(단체) 우편번호/주소 :** 거래자(법인, 단체)의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과 주된 사업장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24. **사업체(단체) 전화번호 :** 거래자(법인, 단체)의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과 주된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가 대표전화번호이고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에 내선전화번호를 부기하여 기재한다. (예: 전화번호가 서울 503-6792이고 내선번호가 123인 경우, '02-503-6792-123'로 기재)

III. 현금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III-1은 현금거래 내역에 대한공통정보를 기재한다.

25. **거래발생일시 :** 현금거래가 발생한 연월일, 시분초를 기재한다(예: 2007년 9월 4일 11시 50분인 경우, "0709041150"로 기재)

26. **거래영업점명 :** 현금거래가 발생한 영업점의 명칭을 기재한다(예: 명동지점).

27. **거래채널 :** 현금거래가 발생한 거래채널을 '1□창구거래 2□자동화기기거래 3□기타' 중에 선택하여 기재한다.

28. **거래수단 :** 거래수단은 1□현금으로 한정하여 보고한다.

29. **거래금액 :** 거래자가 거래한 금액을 최소단위(원단위)까지 기재한다.

30. **거래종류 :** 현금거래가 발생한 거래종류를 '1□계좌 2□비계좌'로 나누고, '2□비계좌' 거래의 경우 '1□송금, 2□외환, 3□유가증권, 4□기타' 거래 중에 한가지 거래유형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또한, 현금의물리적 이동 방향에 따라 '1□지급 2□영수'로 나누어서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기재한다.

31. **거래대리인 존재여부 :** *'III(*현금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거래대리인의 존재여부를 *'1*□존재 *2*□존재안함*'*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 경우, 본 항목에 *'1*□존재*'* 라고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첨부(III-1)

32. **대리인명 :** 거래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33. **대리인실명번호 구분 :** *'34.*대리인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34. **대리인 실명번호 :** *'33.*대리인 실명번호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35. **대리인 전화번호 :** 거래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이 경우,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대리인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예*:*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방식으로 기재*)*

36. **대리인 국적 :** 거래대리인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 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 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일본의 경우, *'JP'*라고 기재*)*

37. **거래자와의 관계 :** 거래대리인과 거래자와의 관계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기타*'*란에 기재한다.

*III-2*는 계좌방식 거래의 경우에 관련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한다. 이는, *'30.*거래종류*'*가 *'1*□계좌*'*인 경우에 기재한다.

38. **관련계좌번호 :** 계좌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 거래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무통장 입금에의한 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는 *'IV'*에서 별도로 기재한다.

39. **계좌개설영업점명 :** 해당 계좌의 개설점*(*계좌의 이월 발행점이 아닌 최초 개설점*)*을 말하나, 영업점간 계좌 이·수관이 발생한 경우로 계좌의 최초 개설점이 전산관리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점을 기재한다.

40. **계좌개설일자 :** 계좌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 해당 계좌가 개설된 연월일을 기재한다.

이는 계좌의 이월발행일이 아닌 최초 계좌개설 연월일을 기재한다.

41. **계좌개설대리인 존재 여부 :** '38.관련계좌번호'에 기재한 계좌가 대리인에 의해 개설되었는지 여부를 선택한다. 본 항목에 '[1]□존재' 라고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2)'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첨부(III-2)

42. **계좌개설 대리인명 :** 계좌개설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43.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 '44.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44.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 '43.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45. **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 :** 계좌개설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 번호는 휴대 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예: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방식으로 기재)

46. **계좌개설대리인 국적 :** 계좌개설대리인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47. **계좌주와의 관계 :** 거래대리인과 '계좌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기타 란에 기재한다.

III-3는 '30.거래종류'가 [2]□비계좌([3]□유가증권)'인 경우, 관련 유가증권 정보를 기재한다.

48. **관련유가증권의 종류 :** 관련된 유가증권의 종류를 선택한다.

49. **관련유가증권번호 :** 관련된 유가증권의 번호를 기재한다. 관련된 유가증권이 1매일 경우 또는 관련 유가증권이 2매 이상이나 연번호 발행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된 각각 1매의 유가증권 번호별 보고서가 생성되어야 하며, 관련된 유가증권이 2매 이상이면서 연번호로 발행된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제일 빠른 유가증권번호와 마지막 유가증권번호를 각각 기재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다.

*III-4*는 *'48.*관련유가증권의 종류'가 *'6*□자기앞수표'인 경우로서, 자기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타행발행 정액자기앞수표를 "자기앞수표실시간 정보교환규약"에 의한 정보를 이용하여 당일 현금으로 지급한 건에 한하여 관련된 정보를 기재한다.

50. **현금지급은행명** *:* "자기앞수표실시간 정보교환규약"에 의한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한 은행명을 기재한다.

51. **현금지급영업점명** *:* "자기앞수표실시간 정보교환규약"에 의한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현금을지급한 은행의 영업점명을 기재한다.

IV.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

'III. **현금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에서 제공된 거래가 본인 또는 타인계좌로 송금되었을 경우*(*무통장입금 의뢰의경우로 비계좌 영수의 경우*)*에 송금 받는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만일 거래자가 본인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한 경우에는 송금인으로서 거래자이자 수취인에 해당하므로 *'II.* 고액현금거래자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IV.* 수취인 계좌에 관한정보' 항목에도 기재한다*.)*

52. **수취인계좌번호***:* 송금 받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53. **수취금융기관명** *:* 수취한 금융기관의 명칭을 기재한다. 보고기관과 동일한 금융기관인 경우에도 기재한다.

54. **수취인*(*수취계좌주*)* 성명** *:* 송금 받는 수취인*(*수취계좌주*)*의 성명을 기재한다.

V. 취소 또는 정정 보고에 관한 정보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발생한 금융거래의 취소 또는 정정 등이 있는 경우라도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고객의 요청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오조작 등에 의해 금융거래를 당일자로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은 그 종사자의 오조작 등 과실로 금융거래가 발생한 익일 이후에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고액 현금거래로 보고된 사항의 취소 또는 정정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할 수 있다. 본 난은 위와 같은 취소, 정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취소 또는 정정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다. '표제부'의 '취소/정정시 종전문서번호'를 포함하여 표제부의 모든 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취소 또는 정정사유 *:* 금융기관등이 금융거래가 발생한 익일 이후에 이미 고액 현금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금융거래 내역에 관하여 취소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정 사유를 *500*자 이내로 기재한다*.(*예*:* 금융기관 직원의 기기 오조작 등*)*